

스웨덴 전문직노총(TCO)의 운영과 의사결정

Karin Hallgren (TCO 홍보국장)

■ 스웨덴 전문직노총(TCO) 현황

스웨덴 전문직노총(TCO)는 스웨덴에서 육체노동자들의 노총인 LO와 대비되어 사무전문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사무전문직노총이다. 1931년 5월 3일 설립된 DACO(De anställdas centralorganisation : 노동자 중앙조직)와 1937년 1월 16~17일에 조직된 TCO(Tjänstemännens Centralorganisation : 전문직노조)의 합병으로 1944년 6월 11일에 결성되었다. 그 규약은 1944년 1월 30일 개최된 DACO와 TCO의 임시총회(General Council)에서 채택되었고, 1944년 6월 11일 TCO의 제정권을 가진 대의원대회(Congress)에서 승인되었다. 가장 최근에 채택된 규약 개정은 2003년 6월 3~5일 TCO 대의원대회에서 이루어졌다.

조합원수는 약 130만 명이고, 조합원의 60%가 여성이며 학생조합원은 약 8만 명이다. 민간, 지방정부, 중앙정부 등 모든 부문을 망라하는 17개의 산별·직업별 회원 노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격을 갖춘 사무기술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사무기술직노조(Sif-367,000명),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사들로 구성된 교원노조(Lararforbundet-221,700명), 주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직들로 구성된 지방정부노조(SKTF-176,600명), 민간무역, 운수, 서비스부문의 사무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월급근로자노조(HTF-167,000명), 간호사, 조산간호사, 방사선간호사, 생의학 분석가들로 구성된 의료직 근로자노조(Vardforbundet-112,000명), 중앙공무원, 공공필수서비스, 국가재단 근로자들로 구성된 중앙공무원노조(ST-82,900명) 등이 회원 조합이다.

TCO의 목적

TCO와 그 회원 노조는 멤버 그룹의 활동과 직업, 일과 가정의 양립 관련 중요한 사항에 관여하고, 영향을 끼치고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력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을 받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노조 참여의 혜택을 보게 하고자 한다. 협력은 노조 컨셉과 공동체에서 노조 활동의 정당성을 강화한다. TCO와 회원 노조는 다른 조직과 협력하고 유대관계를 구축해서 고학력 전문직 근로자들을 위한 적절한 연합 체계를 개발한다. 또한 교육 및 숙련개발 기회를 증대한다.

■ 의의 및 기본 업무

스웨덴 전문직노총(TCO)은 스웨덴 임금노동자노조 산하에 조직되어 있으며,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의 사회, 노조, 경제, 직업관련 이익을 증진하고자 한다. TCO는 정당정치와 관련하여는 중립을 표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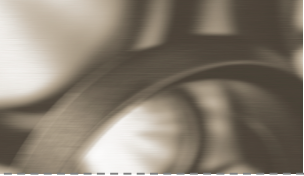
TCO는

- 결사와 협상의 권리를 강화·발전시킨다.
- 노조 컨셉을 강화하고 발전시킨다.
- 정부를 대상으로 그 회원 노조를 대표한다.
- 국제적으로 그 회원 노조를 대표한다.

■ TCO의 기본 가치

TCO의 기본 가치가 그 활동에 반영되는데, 국제연합 인권선언이 노조 활동의 근간이 된다.

- 모든 사람들은 동등한 가치와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들이 그 성, 인종, 성적 기호와 상관없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발전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 남녀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 의무 및 기회를 갖는다 : 남녀평등은 정치적 영향 및 대표 선출 모두에서 TCO 활동에 뿌리 내리고 있다.
- TCO는 민주사회를 지지하는 민주적 조직이다 : 민주주의는 항상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자유로운 민주적 노조는 민주 국가에 필수적이고, 국가내 그리고 국가간 평화와 정의에 기여한다.
- 연대는 노조 활동의 기본이다 : 노조 활동은 연대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상호 지원과 어려움 극복을 돕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TCO는 사회와 노조 조직 모두에서 연대를 지원하고 발전시킨다.
- 정당정치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 : TCO는 정당정치와 무관하지만 이는 TCO가 정치 관련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TCO는 회원 노조와 멤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치 이슈에 관여한다. 정당 정치 독립으로 TCO는 정치적 과반수와 상관없이 일정한 수준으로 해당 이슈에 관여할 수 있다.

■ 가입

TCO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 :

-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 전국 단위의 노조 조직이어야 한다.
- TCO의 기본 가치에 동의해야 한다.

가입 신청은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에서 처리한다. 가입이 기각된 경우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재고될 수 있다.

회원 노조의 권리

TCO와 관련해서 회원 노조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민주적 열린 의사 결정 과정
- 모든 회원 노조의 동등한 대우
- TCO의 재무 상태와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 분쟁과 갈등의 상황에서 연대와 지원

회원 노조의 의무

TCO와 관련해서 회원 노조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하고 민주주의에 헌신
- TCO의 기본 가치 준수
- TCO 기본 업무를 위한 정보 제공
- 늦어도 2월 15일까지 연회비 지불. 연회비는 전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회원 노조의 현역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새롭게 참여한 조직의 경우는 참여한 해 반 년째부터 회비를 지불한다.

자발적 TCO 탈퇴

자발적 탈퇴의 경우 탈퇴를 신청한 해 바로 다음 해 말에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TCO에서 제명

회원 노조가 회원 노조 권한을 상실한 경우 제명될 수 있다. 제명 건은 집행위원회 또는 회원 노조에 의해 제기될 수 있고, 해당 결정은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이루어진다. 대의원대회에서 달리 결정되지 않은 한 제명 결의안이 통과한 해 바로 다음 해 말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 대의원대회

TCO의 최고위 의사결정기구

정기 대의원대회

법적으로 요구되는 정기 대의원대회(Statutory Congress)의 임기는 최대 4년이다. 새로운 대의원들은 이전 대의원대회가 활동하는 4년 안에 선출된다. 집행위원회(Executive Council)가 대의원 대회 일자를 결정하고, 집행위원회는 자문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의 도움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정기 대의원대회는 늦어도 개최 일자 6개월 전에 소집되어야 한다. 발의는 늦어도 대회 개최 3개월



전에 집행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대의원대회 문서는 늦어도 대회 개최 한 달 전에 회원 노조에 전달되어야 한다.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처리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집행위원회 보고
- 감사 보고
- 책임액 면제(discharge from liability) 심의
- 위원장(President) 선출
- 10인의 집행위원회 위원 선출 및 각 위원마다 2명의 후보위원 선출
- 평조합원(ordinary member) 중 두 명의 부위원장(Vice President) 선출
- 두 명의 감사와 두 명의 부(deputy)감사 선출
- 한 명의 공인회계사와 한 명의 부관(deputy) 선출
- TCO 연회비(의무금) 관련 결정.

정기 대의원대회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도 대의원 3분의 2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다루어질 수 있다. 연 조합비 관련 결정사항은 다음 해부터 적용된다. 대의원대회는 연 조합비 안건을 자문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대의원대회는 규약 개정, 위원장 선출, 집행위원회 선출, 회원 노조 제명, 평조합원(lay) 감사 선출과 TCO 해산을 제외한 업무와 결정을 자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대의원대회에서 조직 내 협력 규정을 정의한다.

대의원(congress delegates)

대의원대회는 대의원, 집행위원회의 평위원 및 선출된 평조합원 감사로 구성된다. 각 회원 노조는 현 조합원 15,000명 전부 혹은 일부에 비례하여 당 한 명의 대의원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각 회원 노조는 최소 2명의 대의원을 가질 권리가 있다. 대의원은 회원 노조의 현역 조합원이거나 회원 노조에 고용되어야 한다. 대의원은 한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차기 정기대회까지 기간 동안 임명된다. 정기 대의원대회 전해 말 조합원수가 확정되면 바로 운영위원회는 각 회원 노조에 임명할 수 있는 대의원수

를 알린다. 대의원 혹은 그 후보대의원이 재직기간 동안 사퇴하는 경우, 해당 회원 노조는 즉각 대신할 사람을 임명하고 이를 TCO에 알린다.

투표, 발의 및 제의 권한

대의원대회 대표, 집행위원회의 평위원 및 선출된 평조합원 감사는 투표 권한을 갖는다. 회원 노조는 발의 권한을, 운영위원회는 제의 권한을 갖는다.

의사결정 절차

각 대표는 한 장의 투표권을 갖는다.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단순 과반수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진다. 회원 노조는 가중 투표(weighted vote count)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원 노조는 한 명의 대의원 자격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며, 다시 지난 해 12월 31일 현재 조합원의 수만큼의 투표수를 할당받는다. 가중 투표는 선출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위원장, 집행위원회, 감사의 선출

차기 정기 대의원대회까지 위원장은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다. 위원장이 임기 동안 물러나는 경우,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맡는다. 집행위원회의 기타위원, 후보위원, 감사는 차기 정기 대의원대회 기간까지 정기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선출된다.

임시 대의원대회

집행위원회에서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임시 대회 결정 전 집행위원회는 자문위원회와 상의해야 한다.

산하 조합원수가 전체 회원 노조 총 회원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회원 노조들에서 대의원대회를 요청하는 경우 임시 대의원대회가 열린다. 위원장이 사임하고 대의원대회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



우 신입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가 열린다. 집행위원회가 대의원대회 기간 동안 사퇴하면 집행위원회를 선출하기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가 열린다. 감사가 책임액 면제를 추천하지 않거나 자문위원회가 책임액 면제를 추천하지 않고 대회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회원 노조가 임시 대의원대회를 요청하는 경우 이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대회에서 다룰 안건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임시 대의원대회는 소집된 이유가 된 안건만을 다룰 수 있다. 임시 대의원대회는 개최 요청 또는 위원회 또는 위원장의 퇴진 45일 안에 개최되어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 통지는 대회 개최 이유가 된 이슈를 명시해야 한다. 신속히 대회 관련 문서를 배부한다.

■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정기 대의원대회가 개최되지 않는 시기 동안 TCO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집행위원회는 대외적으로 TCO를 대표하고 TCO의 이익을 보호한다.

집행위원회 구성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0명의 집행위원회 평위원(이 중 두 명이 부위원장이 된다), 각 평위원당 두 명의 후보위원으로 구성된다. TCO 직원들은 인사담당대표(personnel representative)를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 평위원이 퇴진하면, 새 평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후보위원이 평위원의 자리를 맡는다. 직원 인사담당대표(personnel representative)의 참여는 집행위원회와 직원 조직 간의 합의에 따른다. 집행위원회 위원이나 후보 위원은 회원 노조의 현역 조합원이나 직원이어야 한다. 결의안 통과에는 최소한 집행위원회 멤버 중 6명(personnel representative 제외)이 이에 동의해야 한다.

집행위원회 업무

정기 대의원대회가 개최되는 중간에 집행위원회는 TCO 조직 목표와 정책 전략 및 우선순위를 부

여 받는다. 집행위원회는 대회에서 다룰 안건을 준비하고 대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집행위원회는 자문위원회를 소집한다. 이듬 해의 활동과 자금 조달은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운영위원회에서 TCO 자산을 관리하고 전년도 회계 장부를 결산해서 매년 3월 말 전 감사에게 제출되도록 한다.

운영위원회는 합리적이고 현대적인 조직 원칙을 유지한다. 조직 원칙은 ‘조직 내 협력 규정’에서 대의원대회가 정의한다. 집행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원 노조들의 조합원 이전 및 경계 구분 이슈와 관련한 합의 달성을 지원한다. 회원 노조에서 타회원 노조와의 경계 구분 분쟁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한 경우, 관련 회원 노조가 다른 절차에 합의하지 않는 한 운영위원회에서 분쟁을 검토하고 해결한다. 집행위원회 결정에 대한 항소는 대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대회에 상정될 필요가 없는 사항을 결정한다. 집행위원회에서 위원장의 고용조건을 결정한다.


위원장이 자신의 의무를 간과한 경우, 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의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결정이 이루어진 지 45일 안에 대의원대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위원장의 의무

위원장은 TCO 집행위원회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이행되도록 하는 책임을 진다. 위원장은 연간 회계장부가 운영위원회에 매년 제출되어 승인받도록 한다. 위원장직은 상근직으로서 집행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직과 겸임할 수 없다.

■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원칙 및 전략적 결정관련 집행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한다. 자문위원회는 TCO 위원장, 집행위원회 평의원, 각 회원 노조의 위원장 또는 기타 대표들로 이루어진다. 자문위원회는 집행위원회 보궐선거 및 대의원대회에서 자문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위임한 안건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 자문위원회는 매년 책임 면제 추천과 관련한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그러나 집행위원회 평의원은 책임 면제 추천과 관련한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집행위원회는 결의를 위해 정책 이슈를 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하지만 TCO 관리 관련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다룬다. 자문위원회의 각 멤



버는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며, 결정은 단순 과반수에 의해 이루어진다. 회원 노조는 가중 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원 노조는 한 명의 대표 자격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며, 다시 지난 해 12월 31일자 현 조합원의 수만큼의 투표수를 할당받는다. 가중 투표는 선출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 TCO 내 협력기구

TCO 지역협의회(TCO Regional Council)

TCO 지역협의회는 지역단위 회원 노조들의 자발적 협력기구이다. 집행위원회에서 설정한 특별 규약이 이들 협의회에 적용된다. 집행위원회에서 또한 TCO 지역협의회 운영 정책을 결정하고, TCO 지역협의회 설립과 해산을 결정한다.

기타 협력기구

회원 노조는 협상 이슈와 관련한 협력을 위한 특별 협력기구에 참여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근로자 교섭위원회(Public Employees' Negotiation Council : OFR)가 협력기구이며, 민간부문에서도 다수의 협력 조직이 있다.

■ 감사

선출직 비전문 감사가 공인회계사와 상담해서 TCO의 회계장부와 경영을 검사한다.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 대의원대회에 제출해야 하며, 4월 말 이전까지는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는 수시로 필요한 경우 TCO 관리 관련 문서와 회계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 선출된 평조합원 감사 중 최소한 한명은 대의원대회에 참석해야 한다.

■ 준비금

TCO의 준비금(reserve fund)은 특별 결정에 따라 준비금으로 책정되는 자금으로 이루어진다. 준비금 사용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 규약 개정

규약 개정에는 대의원대회 결의가 필요하다. 이때 최소한 3분의 2 과반수 동의로 결의가 통과된다.

■ TCO 해산

TCO 해산은 대회간 최소 6개월의 간격을 두고 열린 두 번의 연속된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되어야 한다. 이 때 최소한 두 번의 대의원대회 중 하나는 정기 대의원대회여야 한다. 두 번의 대의원대회 결의는 전체 대의원대회 대표 중 최소 3분의 2 과반수가 동의가 필요하다. 해산 결의안 통과와 동시에 기존 자산 처리 방법도 정해져야 한다. **KL**